

의안번호	제154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5월 일 (제 300 회)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1년 5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4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년 5월 2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이 개정(2011. 3. 22)되어 관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김에 따라 공문서에 날인하는 공인의 글자도 “한글전서체”에서 “한글”로 사용되도록 개정하여 도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공인의 글자 변경
 - “한글전서체” → “한글” (안 제5조제2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중 “글씨”를 “글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”를 “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, 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공인의 글씨 및 규격)</p> <p>② 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“인” 또는 “의인”자를 붙인다.</p>	<p>제5조(공인의 글자 및 규격)</p> <p>② 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,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“인” 또는 “의인”자를 붙인다.</p>

관 계 법 령 발 췌

□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

제55조(관인의 내용)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,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“인” 또는 “의인”자를 붙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「사무관리규정」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관인부터 적용한다.